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222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78,739,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35,567,671원, 원고 B에게 22,253,151원, 원고 C에게 20,918,4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8281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3. 13.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판결은 2018. 4.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2147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5. 30.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판결은 2018. 6.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 C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140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4. 18.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판결은 2018. 5. 12. 확정되었다.

라. E은 2017. 10.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17. 12.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2017. 12. 15. 원고들은 위 가, 나, 다항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위 라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1. 마쳐진 본등기에 의하여 같은 날 모두 직권말소 되었다.

바. E의 채권자였던 F은 2019. 1.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049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6. 같은 법원은 “E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2895호로 계속된 항소심 역시 2021. 12. 15.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38,557,808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557,808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항소심판결이 2022. 4. 14. 대법원의 2022다203668호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F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049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E에 대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후 E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사실조회신청에 관하여 회신하였다.

아.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254, 2218(병합) 사기 사건에서 E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사기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은 2022.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E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에 관하여 E에 대한 계금사기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통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및 다른 채권자들의 E에

대한 채권은 모두 E의 계금사기와 연관된 채권으로서 E의 재산을 통한 추심은 원고들 및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의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049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0494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나 항소심 판결은 원물반환을 가액반환으로 변경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과 결론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049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0. 11. 26. 무렵에는 원고들이 E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 성동구 []
[])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88.0㎡, 2층 570.36㎡, 3층 570.36㎡, 4층 570.36㎡, 5층 570.36㎡, 6층 570.36㎡, 7층 570.36㎡, 8층 570.36㎡, 9층 570.36㎡, 10층 570.36㎡, 11층 570.36㎡, 12층 570.36㎡, 13층 570.36㎡, 14층 570.36㎡, 15층 570.36㎡, 지층 570.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성동구 [] 대 49671.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84.7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9671.6분의 43.10. 끝.

